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00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2일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안전시설 설치기준으로 추가하려는 안 제5조제1호 ‘소화기(금속화재 소화기 등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전용소화기를 포함한다)’의 경우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 소화기가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반영에 어려움이 있고,
- 안 제5조제7호 ‘방화벽’의 경우, 「건축법시행령」 제46조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에는 방화구획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과
- 안 제5조제8호의 ‘전용주차구역별 연기배출 덕트’의 경우는 주차장이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제연설비나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안 제5조를 현행대로 유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함.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6호로 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제7조(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)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
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
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